



COMPU-RIP 소프트웨어 영업비밀 부정취득 관련 예비적 금지명령 결정에 대한 항고심 사건

16

Barr-Mullin v. Browning, 424 S.E.2d 226 (1993)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노스 캐롤라이나 주 항소법원	사건번호	9110SC1117
판결 일자	1993. 01. 08	판결 결과	일부 유지, 일부 파기, 지침과 함께 환송
원고 (피항소인)	바-물린(Barr-Mullin, Inc.)		
피고 (항소인)	더글리스 엠. 브라우닝 (Douglas M Browning), 프리마베라 시스템 (Primavera Systems, Ltd.)		
참조 법령	노스캐롤라이나 주 영업비밀보호법 G.S. 66-152(3), G.S. 66-152(1)		
참조 판례	Robins & Weill, Inc. v. Mason, 70 N.C.App. 537, 320 S.E.2d 693, disc.reviewdenied,312N.C.495,322S.E.2d559(1984),A.E.P. Industries v. McClure, 308 N.C. 393, 402, 302 S.E.2d 754, 760 (1983).		
영업비밀	COMPU-RIP 소프트웨어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소프트웨어, 역설계, 예비적 금지명령 보증금		

02 사건 개요

원고 회사에서 판매하는 COMPU-RIP 소프트웨어는 목적코드¹⁾만 ROM에 저장되어 판매되고 있다.

피고 브라우닝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피고들은 COMPU-RIP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예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였고 지방법원은 보증금 1만 달러를 조건으로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피고들은 지방법원의 결정에 항고하였고, 본 판결은 항고심 판결이다.

1) 소스코드는 디지털기기의 소프트웨어 내용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타낸 설계도다. 완성된 소스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언어로 변환하면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형성되는데, 이를 '목적 코드'라고 한다.

03 주요 쟁점

원 고	⇔	피 고
COMPU-RIP 소프트웨어는 목적코드 형태로 판매되므로 소스 코드가 공개되지 않는다.		COMPU-RIP 소프트웨어가 공개되어 영업비밀이 아니며, 해당 소프트웨어를 역설계했다.
목적코드만으로는 역설계가 불가능하다.		설령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행위는 “부정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의 예비적 금지명령 취소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 예비적 금지명령 보증금을 미화 10,000달러로 설정한 것은 예상되는 피고의 손해보다 적다.

04 판결 요지

COMPU-RIP 소프트웨어는 목적 코드 형태로 ROM에 저장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소스 코드는 공개되지 않았고, 목적 코드만으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하다. 또한 목적코드만으로는 역설계를 통해 COMPU-RIP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획득 가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성은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COMPU-RIP 소프트웨어 개발에 도움을 주었고, 소스 코드 복제본에 접근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정취득의 프리마 파시(prima facie) 케이스 ²⁾ 가 성립하며 원고가 분안 승소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했다고 인정된다. 또한 영업비밀의 부정취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계속적이고 장기적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지방법원의 예비적 금지명령 판단은 옳다.
지방법원의 예비적 금지명령 취소 기각 결정은 지방법원의 재량이므로 재량권 남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피고들이 제출한 추가 증거를 검토한 결과 지방법원이 피고들의 청구를 기각함에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예비적 금지명령 보증금 액수는 지방법원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보증금을 설정함에 있어 원고의 배상 경제력이나 피고의 손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지방법원은 환송심에서 이를 심리하여 보증금을 재설정해야 한다.

05 Key Point

목적 코드나 실행 코드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프트웨어에 관한 영업비밀이 공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건이다. 소스코드는 해당 제품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기업의 개발 기밀이 드러나기 때문에 제품의 지적재산권이나 영업비밀 침해 및 시장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미국에서 예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2) “Prima facie”라 함은 라틴어로 사전적으로는 “한 눈에 보아”라는 의미를 가진다. 소송법상 ‘prima facie case’라 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볼 때 반증이 없는 한 원고의 승소로 보이는 사건을 말한다.